

의안번호	2214132
의 퇴 인	김형동 의원
회 답 일	2025.11.24.
추 계 번호	25B60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음. <u>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제1항)</u>	재량규정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원인조사 참여가 허용된 사람의 원인조사 참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제4항 신설)	의무규정
		제1항 후단에 따라 원인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원인조사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됨(제5항 신설)	의무규정
2	안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신설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에 참여한 경우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가 산업재해 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하여야 함(제3항) 1.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의무규정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제출, 공개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3	안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됨.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의2. 제56조에 따른 원인조사를 하는 자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의2. 제56조제5항을 위반한 자	의무규정
5	안 제17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항) 1의2. 제56조제4항을 위반하여 원인조사 참여가 허용된 사람의 원인조사 참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제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6조(중대 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 미첨부(제1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	• 미대상(제4항 및 제5항) － 개정안은 누구든지 원인조사 참여가 허용된 사람의 원인조사 참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인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원인조사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신설	×	• 미첨부(제1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	• 미대상(제2항~제4항)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조사보고서가 산업재해 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3	안 제162조(비밀 유지)	—	• 미대상 － 개정안은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자로 하여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170조(벌칙)	—	• 미대상 － 개정안은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원인조사 참여가 허용된 사람의 원인조사 참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되어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¹⁾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5	안 제175조(과태료)		

2. 상세 사유

- 현행법 제56조²⁾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대재해³⁾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전보건)」(고용노동부 훈령 제521호)⁴⁾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 원인

1)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이하 생략)

2)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3)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4)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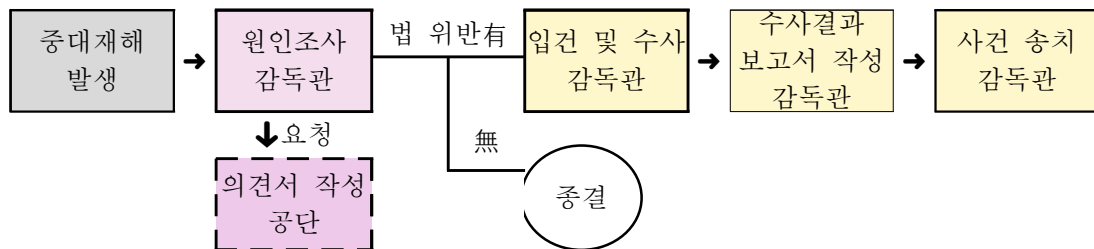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집행을 위한 직무
2. 산안법, 중처법, 산재보험법 및 진폐법(이하 "법령"이라 한다)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및 상담
5. 그 밖에 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조사를 시행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등 관계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음⁵⁾

- 현재 공단은 근로감독관의 요청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공단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그림 1] 중대재해 원인조사 프로세스



자료: 고용노동부

- 개정안은 법률에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대한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관계전문가 등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①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공단의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대한 참여 근거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더라도 현재 공단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근거하여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의 시행으로 공단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 물량이 확대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⁶⁾ 등에 따라 국가의 재정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공단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확대 여부 및 규모, 공단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확대시 그 소요 비용을 공단의 자체 수입이나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충당할지 또는 국가가 공단에 비용을 지원할지 여부와 그 규모를 현

5) 제11조(감독반의 편성) ③ 본부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감독반을 편성할 때에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관련학과 교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 등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참여시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재해조사방법)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원인조사 의견을 받아 재해조사 내용, 조사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6) 제4조(정부의 책무)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점에서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 ②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가 확대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장래에 발생할 중대재해의 발생건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를 관계전문가에게 요청할 횟수, 원인조사와 관련한 지원단가 등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